

공인탐정제도의 올바른 모델설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desirable Model for Licensed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이 상 훈**

〈목 차〉

- | | |
|----------------------------|---------------------------------|
| I. 서론 | IV. 올바른 공인탐정제도의 모델설정을 위한 정책적 제언 |
| II. 이론적 고찰 | V. 결론 |
| III. 국내입법안의 내용과 외국의 공인탐정제도 | |

〈요 약〉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화 시도는 벌써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국가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치안수요에 부응하며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 관련업종의 심각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무산되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탐정제도 도입에 있어 우리사회가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업무의 성격상 민간경비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탐정제도를 기존의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이인기의원안(案)이 가칭 '민간보안산업법(民間保安産業法)'으로 정비되고 있는 때에 즈음하여 동 입법안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조사원 내지 민간조사관이라는 명칭보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현행법이 이미 예정하고 있는 '탐정(探偵)'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옳다.

둘째, 탐정업무가 지닌 공공성에 비추어 행위주체는 자연인보다는 법인(法人)이 되어야 탐정제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셋째, 탐정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에서 공무원 수준의 자격요건(결격사유)을 요구하는 점의 제도의 취지상 합당하다고 보지만, 만 18세 이상의 자에게 탐정자격취득의 문호를 열어두는

* 이 논문은 대전대학교 신진교수 학술연구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대전대학교 법·경찰학부 경찰학전공 교수, 경찰학박사.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자격증의 문호를 넓혔다는 상징적 의미를 제외한다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의 습득이나 관련분야에서의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별다른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법안에서 누락된 탐정보조원제도를 신설하여 관련 업무에 경력을 쌓지 못한 일반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넷째, 탐정의 권한에 있어서는 업무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인과 별반 차이가 없이 아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없는 탐정은 기존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내몰리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적이거나 공공기관의 정보열람청구권이나 사법기관의 허가를 전제한 준사법권의 집행 등의 행위능력을 부여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탐정활동에 있어서 전직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경찰관이라는 사실의 표장을 금지하고 법집행기관에서 직급 이상의 관리자로 근무한 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탐정활동제한 내지 탐정활동지역의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제어 : 공인탐정, 민간조사, 민간경비, 경비업법, 민간조사업법.

I. 서 론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탐정제도를 도입하기위한 입법화 움직임을 시작하였다. 국민의 치안수요 욕구에 부응하고 국가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하며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 관련업종의 심각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제도도입이 무산되었다. 하지만 제도도입을 위한 지난 10년간의 논의를 통해, 이제 우리사회는 탐정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적지 않은 학문적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거쳤고, 적지 않은 수의 탐정제도 입법안이 제출되었다가 철회 혹은 폐기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경찰력의 한계는 비단 민간조사 분야에 국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업무의 민영화를 통한 경찰력의 효율적 활용과 사회저변에 산재한 치안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사회적 자원에 대한 총동원의 개념은 이미 사회적 합의를 가져오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특히 탐정제도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사회적 수요는 이루다 적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예를 들어 보험범죄의 경우 연간 2조 2,000억원의 보험금이 새고 있지만 여전히 적발률은 10%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보험범죄가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결과인데, 이러한 보험범죄로 새나가고 있는 보험금 규모만큼 선의의 계약자인 국민의 피해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¹⁾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력은 한계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기존의 경찰과 검찰조직의 수사부문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러한 구태를 답습하기 보다는 민간의 참여와 조력을 통해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치안자원의 총동원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탐정제도를 도입해 보험범죄 조사 등에 활용한다면 보험범죄를 비롯하여 수사인력이 부족해서 수수방관만하고 있는 실종사건 등에서도 괄목할 만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 논문은 가칭 '민간보안산업법(民間保安産業法)'²⁾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
- 1) 금융감독원은 생·손보업계 등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보험범죄 의심 건에 대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활용, 수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한 후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지만 수사기관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특히 검찰 및 경찰은 보험범죄 전담부서가 없다. 경찰청은 금융, 통화, 공무원, 선거 등 60여 종류의 범죄를 담당하는 지능범죄수사과에서 그중 하나로 보험범죄 기획수사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매년 보험범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단기간동안 진행될 뿐 아니라 보험사기의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수사해야 하는 관계로 강력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데 인적·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 2) 종래의 논의 중에는 탐정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그 입법형태를 현행 경비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경비업무와 탐정업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통합입법의 명칭으로 '경찰업무민영화법'(장석현,

될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그동안 축적된 선행연구의 검토를 중심으로 탐정제도의 도입을 위한 바람직한 모델의 설정에 그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물론 기존 경비업법에 끼워넣기식의 입법안 발의로 문제되었던 법체계상의 문제점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법체계상의 문제는 법률정비과정에서 충분한 조문검토를 통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선행연구자료, 국내외 문헌, 인터넷 자료, 국내외 관련법률 및 법률안 등의 기술적 접근방법에 기초한 문헌연구방법과 공인탐정이 되기 위해 혹은 공인탐정의 조력을 기대하면서 탐정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되기를 고대하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심층면접결과를 논의의 기초로 삼았다.

II. 이론적 고찰

1. 공인탐정의 개념과 입법연혁

1) 공인탐정의 개념³⁾과 명칭선정

타인(의뢰인)으로부터 계약에 의한 보수를 받고 국가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민간인 자격으로 전문적·합법적 조사업무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Private Investigator’ 혹은 ‘Private Detective’라는 명칭이 사용되는데, 이를 직역하면 ‘민간조사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04년부터 경찰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및 국회차원의 특별기구활동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설치한 민·경합동의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조사팀’에서 ‘민간조사관(民間調査官)’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탐정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순수한 민간인 차원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민간조사원’ 혹은 ‘민간조사관’으로 호칭하는 것도 혼돈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강영숙, 2006: 7-8). 또한 ‘민간조사원’이라는 명칭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민간조사관’의 하부조직(장석헌, 2008: 39) 내지 이와 관련한 공조직의 조직구성원으로서 오인될 우려도 있어서 일반 국민들에게 위압감이나 수사기관의 수사공무원과 같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것으로 오해할 우려마저도 없지 않다.

더구나 이러한 명칭의 문제는 입법의 초기단계에서 민간조사업업을 국가제도로 받아들이기

2008: 41) 혹은 ‘경찰서비스민영화법’(최현락, 2008: 173)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3) 탐정업무에 관하여 일본의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2006)”에 의하면 ‘타인의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소재 또는 행동에 대한 정보로서 해당 의뢰에 관계되는 것을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면접에 의한 탐문, 미행, 잠복 기타 이들과 유사한 방법에 의해 실제 조사를 행하고 그 조사의 결과를 해당 의뢰인에게 보고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동법 제2조 제1항 참조). 따라서 ‘탐정’이란 이러한 업무를 직업으로 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는 '탐정(探偵, detective)'이라는 용어가 풍기는 이미지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민간인에 의한 조사(調査)가 마치 국가기관에 의한 수사(搜查)인양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미국이나 영국 등이 사용하는 'Private Investigator'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여 '민간조사원'이라 명명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2) 입법연혁

탐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화의 노력은 1999년 한나라당 하순봉의원이 제출한 '공인 탐정법안'에서 비롯된다. 동 법안은 우선 민간인의 자격으로 수사업무관련 공인자격 소지자의 명칭을 '탐정'이라고 칭하고 있다. 경찰청을 감독관청으로 정하였으며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일정분야의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2005년 9월에는 한나라당의 이상배의원이, 2006년 3월에는 열린우리당의 최재천 의원이 각각 '민간조사법안'을 제출하였는데, 두 의원 모두가 법안의 명칭에서 종전의 '탐정'이라는 용어를 '민간조사원'으로 바꾸고 있다. 하지만 민간조사원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이나 주무관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이상배의원안은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주무관청을 경찰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최재천안은 소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고, 다만 일정한 경력을 갖춘 자에게는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의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무관청을 법무부장관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탐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은 번번이 입법화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이러한 실패의 원인으로는 주무관청에 대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법안 자체의 입법화를 위한 세력의 결집이 분산되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탐정제도와 업무활동 영역 면에서 일부 관련성이 있는 변호사단체 등의 이익집단에 의한 견제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지난 18대 국회에 제출된 이들 2개의 민간조사법안이 회기만료로 자동폐기 됨에 따라 새로이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야 할 즈음인 2008년 9월 24일에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형식을 취하여 이인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2009년 4월 10일에는 강성천의원이 탐정업무만을 규정하는 독립법안으로서 '민간조사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 이론적 배경

탐정업무는 그 본질에 있어서 민간경비(Private Security)의 한 내용이다. 학문적으로

홀크레스트보고서(Hallcrest Report)의 분류를 비롯한 많은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실제에 있어서도 선진 각국에서는 탐정업무(Private Investigation)를 민간경비업무의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21세기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경찰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다양한 민간조직과의 제휴라는 혼성치안(Hybrid Policing)구조가 자리매김하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에 제3부문을 통해서도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시대적 경향을 띠고 있다(서진석, 1999: 179-180). 탐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각종 논의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민간경비의 성장발전이론에서 그 논리적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공동화 이론(Vacuum Theory)은 경찰의 기능이나 역할이 범죄의 양적·질적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여 그러한 경찰서비스의 공백상태(Gap)를 메우기 위해 민간경비가 발전한다는 이론이다. 경찰과 민간경비 상호간에 있어서 관계설정은 다분히 양자의 역할분담이다. 즉 경찰과 민간경비가 상호갈등이나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역할분담의 지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탐정업무 역시 제한된 경찰력이라는 자원의 희소성에 기인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 중에서 경찰업무의 민영화(Privatization of Policing)와도 연결된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법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업무에 일정부분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이 탐정의 주요업무영역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익자부담이론(Profit-Oriented Enterprise)은 그 핵심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구로서 경찰의 역할을 개개인의 안전과 사유재산의 보호라기보다는 국가체제 전반의 유지작용이라는 정치적 역할을 강조하는데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구성원 개개인 차원이나 국가 이외의 사회집단적 차원에서의 안전과 보호는 결국 개인이나 조직 스스로가 담당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기의 조사나 실종아동의 소재지 조사 등의 업무는 그 성격상 다분히 개인의 안전이나 사유재산의 보호와 같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이를 국가경찰에 완전히 의탁할 수는 없고, 개인의 부담으로 해결하도록 하게 될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서의 탐정제도를 통한 스스로의 문제해결방법이 대안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공동생산이론(Co-Production Theory)은 경찰서비스를 포함하는 국가서비스를 담당 국가기관과 시민 내지 단체가 합동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종래 국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경찰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이제는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종래에 단순한 소비자에 머물던 국민이 개입하게 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서비스의 다양성 확보라는 시대적 필요성에 부응하게 되었다. 탐정제도 역시 국가의 수사활동에 대한 시민 참여라는 형태를 띤 민간차원의 접근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3. 선행연구의 검토

전술한 바와 같이 1999년 하순봉의원의 ‘공인탐정에 관한 법률안’ 제출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탐정제도와 관련한 본격적인 연구와 논의가 적지 않게 축적되었다.

황정익(2005)은 공인탐정제도 도입의 사회적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소송법상의 지위나 수사기관과의 공조문제 그리고 경미한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조력자로서의 탐정역할과 보험범죄나 기업범죄에의 적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탐정이라는 특수한 직업을 지휘하고 감독할 만한 전담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에 주목하고 있다.

강영숙(2006)은 박사학위논문을 통하여 한국에 공인탐정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첫째, 관련 법률의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규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둘째, 공인탐정 및 탐정업자에 대한 규율과 등록 및 취소 등 징계와 벌칙규정의 강력한 시행의지를 보여야 하며 셋째, 제도시행 초기에 발생한 문제점과 부작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도 근거규정 및 세부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넷째로는 탐정업 종사자의 자격, 탐정업자의 영업사항, 공인탐정업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규정 등에 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권리확보를 통해 수준 높은 탐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전대양(2006)은 이상배의원안과 최재천의원안을 중심으로 민간조사업법안의 주요쟁점을 비교하면서 업무범위, 자격과 자격시험 및 감독과 관련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리하여 최재천의원안에 비해 보다 세분화된 업무범위를 전제로 해당 전문분야의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격시험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것 보다는 문호를 개방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감독은 경찰청장이 하되 탐정의 관리문제는 업계의 자율을 강조하기 위하여 민간조사협회가 맡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승주(2006)는 규범학적 고찰을 통하여 탐정제 도입여부에 따른 순환모형을 설명하면서 탐정활동을 인정하였을 경우의 선순환구조와 탐정활동을 금지시켰을 경우의 악순환 구조를 그림으로 제시한 후, 규제대상으로서 종사자, 자격자, 사업자 모두가 높은 도덕성과 지적 능력 그리고 의무와 책임 및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확보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상원(2003)의 “시큐리티 교육훈련과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와 조용철(2006)의 “공인탐정 인력의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분석과 검토를 기초로 논의를 보다 보완하거나 재검증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기존 ‘경비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민간산업보안

법”이라는 명칭으로 법안 명칭을 변경하는 등 표결을 위한 법안상정에 앞서 조문체계와 자구 수정 등의 재정비에 들어간 상황에 맞추어 탐정제도가 필요불가결하게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확인해 봄으로서 한국의 탐정제도의 올바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Ⅲ. 국내 입법안의 내용과 외국 공인탐정제도

1. 국내 입법안의 내용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탐정관련 입법안은 크게 2가지라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이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성천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조사법안이다.⁴⁾ 아래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상 이들 법안의 골자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1) 경비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인기의원 발의)

가. 경비업의 한 분야로서 민간조사업무를 규정하고 민간조사를 행할 수 있는 ‘민간조사관(民間調査官)’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민간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민간조사업자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성실의무, 불법·부당한 사건 수임금지 의무, 허가증의 대여 금지 의무, 허가증의 게시 의무, 수임부 작성·보관 의무,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 및 제7조의2 신설).

라. 민간조사관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마. 경찰청장 주관으로 매년 1회 이상 민간조사관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시험과목·방법·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8조의3 신설).

바. 민간조사관이 조사할 수 없는 사실의 범위를 규정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신고의무,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8조의4 신설).

사. 민간조사업자는 민간조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민간조사관으로 하여금 대통령

4) 강성천의원안은 본 연구의 직접적인 분석대상은 아니지만 법무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대표적인 법안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를 비교하여 일견할 필요성이 있어서 병기하는 수준에서 제시하였다.

령으로 정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안 제18조의5 신설).

- 아. 민간조사업자의 허가취소·영업정지, 민간조사관의 자격취소, 이를 위한 청문을 규정함(안 제19조, 제20조의2 신설 및 제21조).
- 자.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민간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차. 민간조사업자가 고의 과실로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안 제26조).
- 카. 민간조사관, 민간조사업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28조 및 제31조).

2) 민간조사법안(강성천의원 발의)

- 가. 본 법은 민간조사제도를 확립하여 민간조사업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업무수행의 적법성을 담보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밝힘(안 제1조).
- 나. 용어의 정의와 '민간조사원(民間調査員)'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및 제3조).
- 다. 민간조사원이 아닌 자는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며, 민간조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함(안 제4조).
- 라. 민간조사원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을 인정함(안 제5조).
- 마. 민간조사원 자격시험, 자격심의위원회, 및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바. 민간조사원이 민간조사업자로서 개업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의 신청과 거부, 이의신청, 등록취소, 휴·폐업신고 등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및 제17조).
- 사. 민간조사업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와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18조).
- 아. 민간조사업자가 수집하거나 조사할 수 없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9조).
- 자. 민간조사업자에게 업무범위 초과행위 및 자격증 대여의 금지의무, 사건부 작성·보관 의무, 성실의무, 폭행·협박 또는 위계나 위력의 사용금지 의무, 부당한 사건 유치 금지의무, 겸직금지 의무, 비밀누설 금지의무 등을 부과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7조 및 제29조).
- 차. 민간조사업자가 고의 과실로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강제함(안 제26조 및 제47조).

- 카. '법무부장관'이 민간조사업자를 관리·감독함(안 제31조).
- 타. 민간조사원이 민간조사업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민간조사원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징계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48조 및 제49조).
- 파. 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규정을 마련함(안 제50조 및 제52조).
- 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정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

2. 외국 공인탐정제도의 운용실태

1) 미국

미국의 경우 탐정은 대개가 전직 경찰, 전직 법집행기관의 수사관, 군헌병 출신 등이 은퇴 후에 자격 및 면허를 취득하여 활동하고 있다. 특히 현직 경찰관들이 경찰관 신분으로 경비원을 부업(Moonlighting)으로 할 뿐만 아니라 사설탐정면허를 취득하여 부업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경찰 조직 내부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조용철, 2006: 119-121).

탐정제도는 각 주마다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는데, 뉴저지주, 인디애나주, 플로리다주 그리고 버지니아주 등 일부 주는 면허시험 없이 일정한 자격과 경력만 있으면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이상원·김상균, 2006: 58).

미국의 경우 공인탐정은 조사요원(일반탐정)을 고용인으로 두고 탐정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의뢰인에게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제한적이지만 정부기관의 기록열람 및 수사기관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수사정보 자료회사로부터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또한 공인탐정은 정부로부터 사건의 의뢰나 하청을 받을 수도 있는데 현재 많은 탐정들이 경찰과 공조하거나 관선변호사, 검찰은 물론 군 수사기관과도 계약을 맺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검찰청의 경우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탐정들과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탐정들이 법정에서 증언 시 전문인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는다.

반면에 일반탐정은 국가에서 규정한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채 면허(License)를 가진 공인탐정회사에 소속하여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일을 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일을 하거나 계약 혹은 상담을 할 수 없는 등 업무범위와 권한에도 공인탐정과 차이가 있다(강영숙, 2006: 14-15). 이들은 단지 취업을 할 수 있는 일반 취업허가증(Employee Registration Card, Investigator Permit)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강효은, 2000: 240-241).

2) 영국

영국에서는 탐정이 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이나 규제가 없기 때문에 문호가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사업무나 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지니고 있는 전직 경찰이나 전직 수사 및 정보기관 출신들이 탐정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다(이상원, 2007: 9-10).

이러한 산업환경에 따라 수사전문기법이나 전문지식을 교육시키는 탐정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하여 연수를 받고 이러한 연수를 통하여 국가면허국에서 발급하는 국가직업인증(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을 취득할 수 있는데, 2006년부터 탐정업에 대해서도 국가직업인증 3등급을 취득하면 탐정업을 개업할 수 있다.

민간경비산업법(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에서는 민간경비산업의 범주를 사람과 재산의 보호, 불법주정차, 시큐리티컨설팅으로 구성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3) 호주

호주의 탐정관련법 규정은 주마다 다르지만, 퀸즈랜드(Queensland)주는 사례금을 받고 타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해 주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금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개인의 고용인이나 사례금을 위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기록이나 자신의 고용주가 가진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탐정이 아니다. 한편 빅토리아(Victoria) 주에서는 보디가드, 군중관리자, 경비원과 달리 탐정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고용되거나 실종자를 찾아주거나 타인의 특성이나 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상원, 2008: 26).

공인탐정면허는 주경찰국과 소비자 보호국 또는 공정거래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New South Wales, Victoria, Western Australia 주는 전자가, Queensland, South Australia, Tasmania 주는 후자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이상원, 2008: 26).

호주에서는 국가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수료경력 및 공인시험성적 뿐만 아니라 응시자와 1년 이상 친분이 있는 3인 이상의 보증인이 필요한데 공인탐정이 업무 중에 위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보증인에게 그 책임을 연대하여 묻기 위해서이다(강영숙, 2006: 106).

4) 일본

일본은 2006년 6월 8일 “탐정업의 업무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탐정업법)”을 제정함으로써 그 동안 신고제로 운영되어 오던 탐정업을 국가가 관리하고 규제하는 공인탐정제도를 채택하여 제도의 운영방향을 수정하였다. 이법은 탐정업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정함으로써 그 업무운영의 적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개인의 권리이익의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는데(일본 탐정업법 제1조), 탐정업법의 제정으로 탐정업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한 신고제 실시, 업무운영의 적정화, 개인의 권리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탐정의 권한은 특별한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범죄수사나 사건처리에 있어서 민간인이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차별 목적으로 신원을 조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사회문제가 된 경우가 있다. 1998년 6월 오사카, 동경 등 많은 흥신소들이 대기업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취직 희망자의 피차별부락(被差別部落) 출신 여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차별 목적의 신원조사를 한 것이 밝혀져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강영숙, 2006: 88). 또한 결혼 시 상대방의 차별신원조사를 의뢰한 의뢰인들로부터 보수를 받은 사건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탐정업법은 제9조(탐정업무의 실시에 관한 규제)를 두어서 '해당 탐정업무에 관한 조사 결과가 범죄행위, 위법으로 인정한 차별목적의 조사 기타 위법한 행위에 사용될 것을 안 때에는 해당 탐정업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IV. 올바른 공인탐정제도의 모델설정을 위한 정책적 제언

이상에서 살펴 본 각국의 탐정제도의 특징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물론 각 나라마다 저마다의 문화적 환경에 따른 제도적 특성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OECD가입 후 자유무역을 통한 국경 없는 시장을 만들어가는 세계경제의 거대한 흐름에서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사정은 더 이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래에서는 탐정제도의 주체인 조사업무 행위자의 명칭에서부터 탐정업무의 주체와 범위, 탐정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 탐정의 권한과 의무, 그리고 탐정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에의 부정확한 접근이라는 부작용과 관련하여 전임자 표시금지 및 공직자 퇴임 후 일정기간 활동제한에 대해서 언급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탐정(探偵)' 명칭의 사용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09.10.2, 법률 제9617호, 2009.4.1, 전부개정, 입법예고)'에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정보원·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40조 제5호)고 규정하고 있다. '신용'정보회사 라는 제한된 조사업무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조사를 의미할 수 있는 '정보원' 내지 '탐정'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탐정의 업무범위는 이제 더 이상 '신용'조사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있고, 조사의 주체가 민간인인지 혹은 국가공무원인지에서만 차이가 날 뿐 법률에 근거한 조사의 목적이나 내용 자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차제에, 명칭에 있어서 굳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회피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시 말해 기존의 신용정보회사는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 등')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동법 제40조 제4호), 이 같이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내는 경우에는 관련조사업무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보원 000' 내지 '탐정 000'이라는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의 태도는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제한된 조사업무(신용조사 등)를 전제한 것이므로, 바야흐로 탐정제도가 도입되는 마당에 "우리나라 법체계가 이미 상정하고 있는 '탐정'이라는 용어"-이것이 법문상 비록 사용금지를 전제한 용도로 열거되고 있다고 하더라도-의 사용을 항구적으로 금지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공인탐정과 같은 광범위한 조사업무영역에서는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조사'와 같은 신용정보회사등에서 이루어지는 제한된 조사업무영역에서는 현행법에서와 같이 '탐정'이라는 용어사용상의 금지를 풀어서 결과적으로 공인탐정의 제도적 취지를 명칭에서부터 한껏 부각시켜줄 필요가 있다.

한편, 행정기관과 타법에서도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국세청이 소득세 부과 목적상 사용하는 기준경비율 코드(코드번호 749200)에 의하면 탐정업이 직업명칭으로 사용되고 있고(http://www.nts.go.kr/cal/cal_04_01.asp?now_year=2008&gijun), 경비업법시행령에서도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경비관련업 중 사업지원 서비스업 분야에서 탐정업을 경비업 내지 경보시스템 서비스업 등과 함께 명기하고 있음(동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별표1의2)에 비추어 우리의 입법자는 '탐정'이라는 용어를 이미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해당조항과의 차별화와 경비업법시행령 그리고 국세청의 기준경비율 코드에서도 '탐정'이라는 명칭을 해당업종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등, 현행법과 관련행정기관의 행정행위상의 통용하는 명칭이 이러할진대, 민간인에 의한 조사업무를 국가가 직업의 하나로 제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기존에 통용되던 명칭을 버리거나 굳이 '민간조사관' 내지 '민간조사원'으로 달리 정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물론 수사와 조사가 형사소송법상 구분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모두가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을 전제하는 용어로서 'Investigation(조사; 수사; 연구)'⁵⁾에서 연유하므로, 탐정이라는 용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상의 '경비원' 혹은 '민간경비'라는 명칭이 갖는 사회적 편견으로 말미암아 당해 직업종사자들의 직업적 자긍심에 있어서 부정적 자아형성을 가져왔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실용성(實用性) 측면에서 굳이 '민간'조사원이라는 명칭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민간'조사원이라는 명칭이 우리사회가 극복해야할 의식 중, 관존민비(官尊民卑)의 사고방식에 근거하고 있다면 탐정제도의 올바른 성장발전을 위해서라도 '민간'이라는 용어를 벗어 버리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시민참여라는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맞다.

'탐정(探偵)'이라는 용어가 상대적인 의미에서 통상 사회일반인의 사용에 익숙하고 친숙하게 다가서는 장점이 있고, '사립탐정' 내지 국가가 그 자격을 인증하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공인탐정'이라는 명칭과도 어감도 잘 어울린다. 따라서 가칭 '민간보안산업법'상의 민간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명칭은 '탐정'으로 함이 옳다고 본다.

2. 탐정업무의 주체와 업무범위

법안 제3조와 관련하여 탐정업무 수행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자연인(自然人)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법인(法人)으로 제한할 것인지 문제된다.

애초 경비업의 업무주체를 법인에 한하도록 한 취지가 경비업무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사회적 책임을 담보해 낼 수 있는 형식을 요구한 것이므로 탐정업도 경찰업무의 민영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분히 공공성을 띤 제도라고 할 때 법인에 한하여 그 업무주체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다분히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기타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도입초기에는 한시적이거나 탐정업체의 난립을 막고 탐정서비스의 수준을 일정부분 유지하기 위하여 공인자격증 제도와 함께 자연인(自然人) 개인보다는 다소 그 책임이 두텁게 요구될 수 있는 법인(法人)의 형식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인규의원안은 법안 제2조 정의에서 민간조사업무를 포함하고 그 업무의 내용으로 의뢰

5) 조사(調査)란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봄을 뜻하고, 수사(搜查)란 찾아서 조사함 혹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서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수사 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search>). 한편 'Investigation'의 영영사전상의 개념은 'A proces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accident prevention which includes the gathering and analysis of information, the drawing of conclusions, including the determination of causes and, when appropriate, the making of safety recommendations'이라고 정의되고 있다(웹스터온라인사전: <http://www.websters-online-dictionary.org>).

에 의해 ①미아·가출인·실종자에 대한 소재파악 ② 소재가 불명한 물건의 소재파악 ③의뢰인의 피해 확인 및 그 원인에 관한 사실 조사를 수행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안 제2조 1호 바목). 이것은 대단히 제한된 업무범위로서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의 확보 등과 같은 업무에 탐정제도가 국가기관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적극 활용될 것이 기대되는 현실과도 거리가 있다. 따라서 예시적으로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라는 포괄규정을 두어 현실성계 탄력적으로 법운용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둘 필요가 있다.

기존 직업의 탐정제도 활용여지를 입법안과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직업별 탐정제도 활용내용

직업분야	탐정제도의 업무활용내용
검사와 법집행기관	*범죄수사 *도주자 체포 *증인확보 *증거보전 및 감시
변호사 및 변리사	*변론준비절차상 사건의 사실관계조사 *증인 및 증거확보 등 재판자료수집
출판사	*저작권 침해조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조사
보험회사 및 보험업자	*보험사고시 사실관계조사 *보험사고시 지급청구조사
일반 기업 및 개인	*평판조회 *채무자등 거주지 확인 *재정상태 및 신용조사 *은행대출시 신용상태 조사 *사람 찾기 및 소재파악 *불륜조사 및 소행조사 *분실 도난 재산의 소재파악 *손해배상관련 원인과 책임조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

자료: 하순봉의원안(1999), 이상배의원안(2005), 최재천의원안(2006), 이인기의원안(2008), 강영숙(2006: 20)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임.

나아가 공인탐정의 직무내용은 조사활동 내지 수사활동을 통해 사실관계의 객관적 진실(사실)을 밝히거나 이에 도움이 되는 일체의 활동으로서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불법 및 위법행위가 아닌 사항으로 폭 넓게 규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객관적 진실 내지 사실관계의 규명에 있어서 행위주체가 국가기관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적법한 수단을 통한 접근이라면 굳이 제한하여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3. 탐정의 자격요건과 탐정보조원 제도

경비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18조의2에서는 탐정의 결격사유로 ①금치산자 또는 한정치

산자 ②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민간조사관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시험 시행연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인 자로 정하고 이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조사관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와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탐정제도의 직업특성상 공무원과 동등한 정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탐정업무 종사자로 유입될 관련 직무경력자들이란 대부분이 전직 공무원이므로 무리한 사항을 요구하는 규제성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연령의 18세 이상인 자는 탐정이 될 수 있다는 법안의 태도는 탐정산업으로의 진입통로를 확장하여 넓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선언적 의미 밖에는 없다고 본다. 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는 응시자격 규정에 비추어보면 이것은 더욱 명백해진다.

이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탐정보조원 제도'의 설치이다. 동 법안에는 이를 흠결하고 있어서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공인자격증을 요구하는 직역 중에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행정사, 관세사, 변리사 등의 관련법규에서도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업무상 필요를 인정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현실적 필요를 무시한 입법으로 불필요한 범 위반자를 양산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사회가 범법자를 제도적으로 양산해 내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정한 경력을 갖추지 못한 채 진입을 희망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가까이서 실무를 익히고 장차 공인 탐정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4. 탐정의 권한과 의무

경찰업무의 한 분야인 수사업무를 민간자격증 소지자가 실시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불신은 탐정제도의 도입자체를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장벽이다. 따라서 동법을 개정안에서도 공인탐정에게 특별한 수사권이나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일반인과 같은 강제력 없는 임의수사 내지 조사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 사료된다.

이미 살펴 본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탐정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서 탐정은 일반인과 같은 자격으로 특별한 권한 없이 각종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분위기는 기존의 논의 중에서 탐정제도의 도입취지가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그리고 불법행위의 온상이었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제도적으로 양성화하여 양지로 이끌어 내야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도 제도적으로는 합법적인 명칭과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명칭에서 이미 불법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도래한다고 할지라도, 그 제도(制度)와 제도의 불법적 운영이라는 행태(行態)와는 엄연히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탐정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구체적인 조사업무 수행에 있어서 권한이 없다면 탐정이라는 합법의 탈을 쓰고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불법을 강요당하는 현실은 미리 경계하여야 한다. 제도의 명칭이 '민간조사원' 이든 '탐정'이든, 설혹 '흥신소' 이건 '심부름센터'이건 간에 업무의 성격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정수준의 권한은 부여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권한까지는 아닐지라도 법인체인 탐정사무소 명의의 신고나 요청에 대해서는 경찰 기타 관련 국가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이라도 두어서 일반인과는 차별화된 일정 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탐정업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같이 아무런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탐정'이라는 거창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탐정'의 탈을 쓴 또 다른 이름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인탐정이 조사권을 포함하는 준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원이 허가한 영장집행도 가능하며 진행 중인 사건에 몰래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이상원, 2006: 63)하는 호주의 경우와 제한적이거나 정부기관의 기록열람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가능하도록 하는 미국의 사례는 탐정업무에 필요한 일정한 범위의 권한을 부여하여야만 탐정업무 종사자들을 제도적으로 불법으로 내몰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공인탐정은 탐정업무의 결과가 범죄행위일 때는 물론이고 차별목적 기타 반사회적인 행위와 같은 선량한 사회풍속에 위반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안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등 일정한 권한을 부여한 탐정에게 동시에 일정한 공익적 부담을 지울 것도 요구된다.

5. 전임자 표시금지 및 공직자 퇴임 후 일정기간 활동제한

탐정에게 일반인과 구별되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현행법 등의 체포, 긴급피난 등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동일한 권한만 인정되고 사유재산이나 신체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와 관련하여 탐정에게 특별한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인이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즉, 공인탐정일지라도 명함이나 광고에 있어 그가 전직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경찰관이었던 것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여, 전직(轉職)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다는 외관을 보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제한은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침해 등의 비판의 소지가 있지만 탐정업무의 성격상 불가피한 공익적 목적에 근거하며 제한기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제한의 내용은 당해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면 된다고 본다.

또한 법집행기관등에서 일정 직급 이상의 관리자로 근무한 공직자는 퇴직한 후 일정기간 동안 탐정활동제한 내지 탐정활동지역의 제한을 두는 것 필요가 있다. 재직기간 중에 공인탐정에 대한 정보제공 기타 편의 제공이 사전에 이루어지거나, 공인탐정이 되고 난 다음에도 탐정업무의 해결을 위해 전 직장의 수사관련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불법한 접근을 통해 개개인의 사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경비업법 개정안에서의 탐정의 법적 명칭인 ‘민간조사관(民間調査官)’은 외관상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기타 명함이나 사무실에서도 이를 기재 혹은 게시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탐정제도는 공경찰의 공급부족을 빚고 있는 국민의 치안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가의 수사기관과 정보기관 등 공공의 법집행기관의 활동을 보완한다는 측면, 그리고 개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노력에 일응 부응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 제도적 가치는 이미 검증되었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지난 1999년 하순봉의원이 제기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아직도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이제 10년이란 시간을 넘어서고 있다. 수사 내지 조사과정에서의 충돌을 우려하는 검찰이나 직역의 중복으로 시장의 잠식을 우려하는 변호사협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탐정법안’이 통과하면 사생활 침해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경제력에 따라 정보접근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는 여론 역시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말미암아 이 법안은 10년째 발의되고 폐기되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시기적으로 탐정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사회적 환경이 성숙하지 못한 점도 있겠지만, 탐정제도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충돌과 더불어 충돌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어야 할 만큼 사회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에 OECD 회원국가에서는 공인탐정제도가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의 형태로 우리나라에 진입하여 ‘경영컨설팅’ 등의 직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업간 M&A에 따른 경영 및 재무정보의 탐지나 첨단산업분야의 기업정보를 탐지하기 위한 정

보전쟁에서 시장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대적으로 국내기업의 생존과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는 위험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다. 단순히 직업의 자유(自由)를 논하기 전에 탐정제도의 도입과 올바른 모델설정을 통한 신속한 정착과 발전은 국민 생존권(生存權)의 문제라는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관계당국도 종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의 현실적 폐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을 탐정제도 도입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한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많은 정보 중에서 주로 경제적인 '신용정보'에 국한하여 타인의 상거래나 자산, 금융 기타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흥신소' 내지 '신용정보조사업'이나, 순수하게 민원서류나 일반 업무대행을 주로 하는 '심부름센터'의 전과(前科)는 더 이상 탐정제도의 도입에 있어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일단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이 제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먼저 사적 영역부터 도입하고 난 후에 점진적으로 그 필요성에 따라 공적 영역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자는 일부의 주장(장석현, 2008: 46)은, 탐정제도가 민간경비산업의 커다란 축으로서 경찰서비스는 물론 법원과 변호사의 업무가 가진 공급측면의 미비점을 공공업무의 민영화의 틀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탐정제도 도입의 본질이며 제도적 취지라는 사실을 간과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개인의 사생활 조사가 탐정업무의 전부라는 잘못된 인식은 사회적 논의를 엉뚱한 방향으로 호도하여 왔다. 이제는 법원과 수사기관의 업무, 기업의 산업기밀과 영업기밀의 보호, 보험회사의 보험사고 조사 등등 개인보다는 국가시스템과 기업 중심의 보안산업 영역에서 보다 큰 비중을 가지고 탐정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탐정제도의 주체인 탐정명칭의 사용문제를 비롯하여 업무주체와 업무범위, 자격요건, 권한과 의무 그리고 전임자 표시금지 및 공직자 퇴임 후 일정기간 활동제한 등 일정부분에 대해서만 분석하고 있다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공인탐정시험의 과목, 공인탐정의 교육, 감독관청 및 감독과 징계 및 벌칙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영숙(2006).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 강효은(2000). 『탐정은 벤처보다 낫다』, 동아일보사.
- 이상원(2007). “민간조사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학술세미나: 11-25.
- 이상원(2008). “민간조사(탐정)제도의 도입방향”, 2008년도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학술세미나: 11-33.
- 이상원·김상균(2006). “공인탐정 교육훈련 모형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제8회 춘계세미나 발표자료: 47-76.
- 이상훈(2008).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이윤근(1989). 『한국 민간경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장석현(2008). “한국민간조사(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008년도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학술세미나: 35-52.
- 전대양(2006). “민간조사법안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제8회 춘계세미나 발표자료: 1-26.
- 조용철(2006). “공인탐정 인력의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제9회 춘계세미나 발표자료: 119-121.
- 최현락(2008). 『민간조사사업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황정익(2006). 『공인조사(공인탐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 국외문헌

- Charles P. Nemeth, JD, LIM.(2001). *Private Security and the Investigation Process*, Second Edition, Butterworth - Heinemann.
- Cunningham, W. C. and Strauchs, J. J. and Van Meter, C. W.(1990). *Private Security Trends 1970 to 2000: The Hallcrest Report II*. Boston: Butterworth-Neinemann.
- Cunningham, William, C., & Todd, H. Taylor.(1985). *Private Security and Police in America : The Hallcrest Report*. Portland, Oregon: Chancellor Press.
- Home Office(UK).(2007). *Partial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egulation to Implement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 in Respect of Private Investigators and Precognition Agents*.

3. 기타자료

- 경비업법시행령(시행 2009.7.1,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6.30, 타법개정).
- 경비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이인기의원 대표발의, 2008년 9월 24일, 의안번호: 1801001).
- 경찰청. “민간경비발전협의회 (제2차)회의자료”, 2009. 6. 10.
- 공인탐정법안(1999년 하순봉의원 입법안).
-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2009. 7. 27](http://www.nts.go.kr/2009.7.27) 검색).
- 네이버 국어사전([http://krdic.naver.com/2009. 7. 22](http://krdic.naver.com/2009.7.22) 검색).
- 민간조사법안(2005년 이상배의원 입법안).
- 민간조사법안(2005년 최재천의원 입법안).
- 민간조사법안(2008년 강성천의원 입법안).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 2009.10.2, 법률 제9617호, 2009.4.1, 전부개정).
- 웹스터온라인사전([http://www.websters-online-dictionary.org/2009. 7. 22](http://www.websters-online-dictionary.org/2009.7.22) 검색).

Abstract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desirable Model for Licensed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Lee, Sang Hun

There have been great demands for various private searches and collecting information activities. but in Korea it is still banned to supply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and to use the term 'private investigation'.

So establishment of desirable model for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is essential factor in strategic approaching for privatization of policing. In most developed countries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is generally permitted and various methods to solve the side effects of that are considered. It is necessary to revise more the Security Business Law to introduc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so that the dispute on determining how to do and what to do.

It looks like that police agree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because this could be an option when it comes to the job that its members can take after retirement and because this system helpful their own work.

Actually Korea government have tried to prepare the law enactment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since 1999 but have been failed.

This study focuses on implementing the suitable system for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in Korea, which includes the consideration of the logical validity of the introduction by comparing with other foreign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We should make research and effort to cope with such as a partial amendment about the problem and the side effect that can be happened in a beginning stage of system trial.

Key Word : Licensed Private Investigator, 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Security, Security business Law,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Law

논문투고일 2009.07.30, 심사일 2009.08.10, 게재확정일 2009.09.01